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김민전 · 서천호 · 김기현
최수진 · 권영진 · 이소희
서지영 · 최보운 · 곽규택
조지연 · 조배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,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, 대법원장 및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 및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“공수처”라 함)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(이하 “중수청”이라 함)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·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,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.

특히,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되면서, 기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(1급~4급 등)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임에

도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수청 고위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 발생 시 통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형 비리 및 사법·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중수청의 고위직 인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,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,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,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
법률 제 호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러.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하목”을 “하목 및 러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
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고위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(職)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. 가. ~ 더. (생 략) <u><신 설></u> 2. ~ 5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더. (현행과 같음) <u>러.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)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“수사처”라 한다)를 둔다. 1. (생 략) 2. 제2조제1호다목, 카목, 파목, <u>하목</u> 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	제3조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하목 및 러목</u> ----- ----- -----

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·③ (생 략)	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